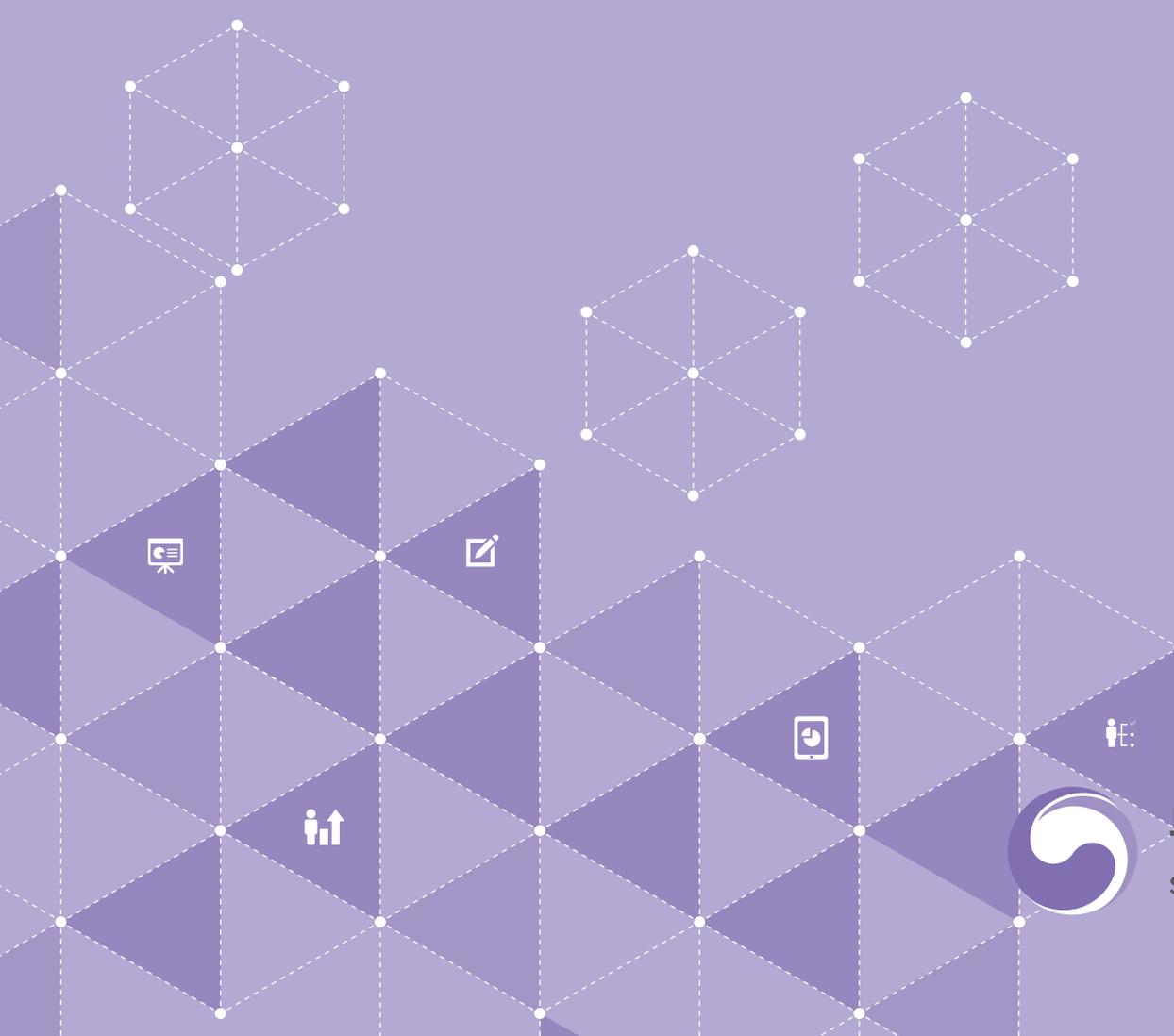


2020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 조사지침서





## I. 조사관련 기본개념 및 설명

3



## II. 조사항목별 작성 요령

7



## III. 조사표견본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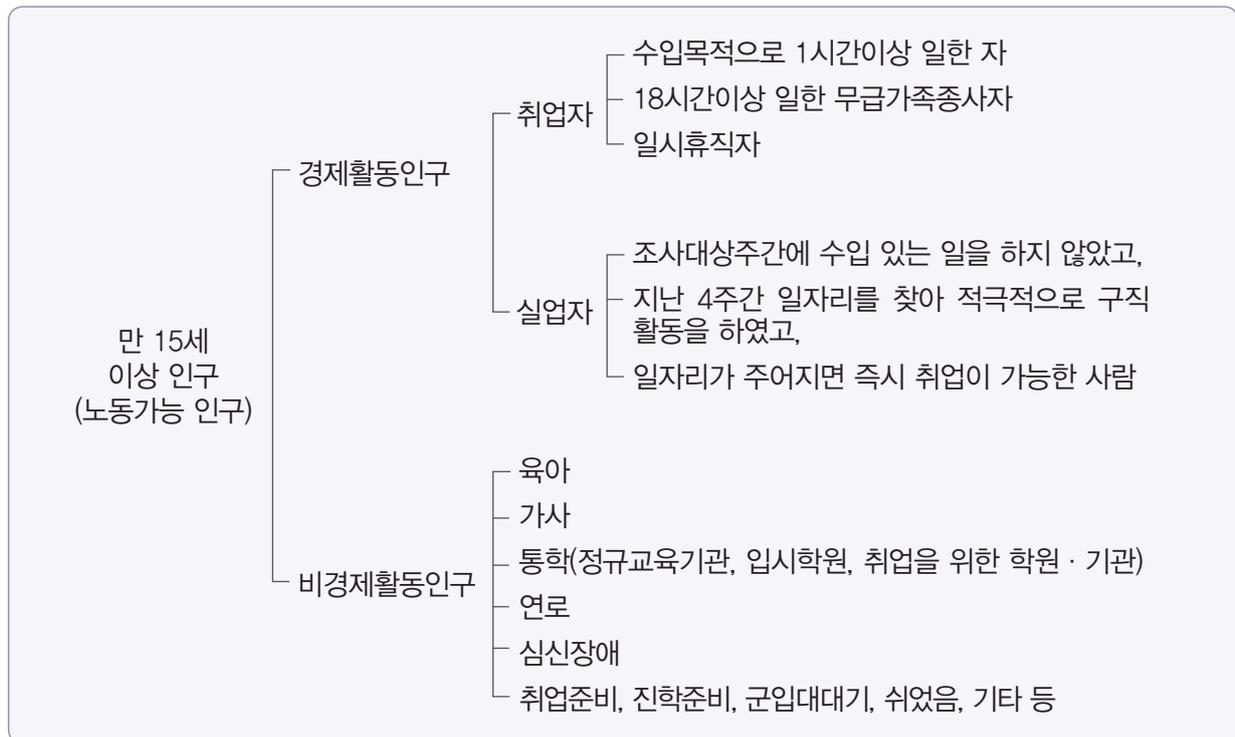




# I

## 조사관련 기본 개념 및 설명

### 경제활동상태



- 만 15세 이상 인구 : 4월 15일 현재 만 15세 이상인 자
  - 근로기준법 제64조 최저 근로연령인 15세를 고용통계 대상인구 하한연령을 정함
- 경제활동: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수입이 있는 일을 행함을 뜻함
  - 수입이 있더라도 다음의 활동은 경제활동으로 보지 않음
    - 법률에 위배되는 비생산적인 활동(예: 도박, 매춘 등)
    - 법률에 의한 강제노역 및 봉사활동
    - 경마, 경륜, 증권, 선물 등 투자활동
- 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말함
- 취업자: 아래 세가지 조건 중 한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취업자로 간주
  - ①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 ② 동일가구 내 가구원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조사대상주간에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 ③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기간 중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휴가,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 **실업자: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실업자로 간주**

- ①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음
- ②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음
- ③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 **비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주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함**

예) 육아, 가사, 통학, 취업준비, 진학준비, 연로, 심신장애, 군입대대기, 쉬었음, 기타 등

**참고** 혼동하기 쉬운 실업자 유형

- **신문이나 인터넷, 기타 구직기관에서 구인 광고를 조회만 하는 경우 ⇒ 실업자 아님**  
예) 구직기관이나 구직의사보다 구직활동이 실업자 여부를 결정
- **회사취업을 위해 취업시험을 준비 중인 사람 ⇒ 실업자 아님**  
예) 시험 준비 자체는 구직활동이 아님
- **새로운 사업을 개업하기 위해 사업구상을 하고 있는 사람 ⇒ 실업자 아님**  
예) 단순한 사업구상만으로는 구직활동이 아니며 구체적인 시장조사나 매장 탐색 등이 필요함
- **한 달 전에 취업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떨어진 경우 ⇒ 실업자 아님**  
예) 4주 전의 구직활동임, 4주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실업자
- **취업시험 시험합격 후 대기 기간이 한 달 이상인 경우 ⇒ 실업자 아님**  
예) 한 달 이내 취업이 보장된 경우에만 기다리는 기간이 실업자임
-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학원에 다니는 경우 ⇒ 실업자 아님**  
예) 직업교육학원 통학은 구직활동이 아님

## 참고 농치기 쉬운 취업자 유형

- 1주간 수입 있는 일을 1시간만 일을 함 ⇒ 취업자  
예) 전업주부가 아르바이트 삼아서 집에서 마늘을 까는 경우
- 1년의 대부분 일을 하지 않지만 조사대상주간에 잠시(1시간 이상) 일을 함 ⇒ 취업자  
예) 전업주부가 조사대상기간 KBS 방송국에 출연료를 목적으로 방송에 출연한 경우
- 매달 일정기간 일하는 임시나 일용 근로자가 조사대상주간에만 일시적으로 쉬고 있음 ⇒ 취업자  
예) 성모병원에 호스피스로 등록되어 있어 매달 일정기간 일을 하지만 조사대상주간에는 일이 없었음
- 직장이 있으나 휴직 중인 경우 ⇒ 취업자  
예) 출산휴가 중인 경우, 복귀할 수 있는 무급휴직
- 봉사직이라 하지만 일정금액의 고정급이 있음 ⇒ 취업자  
예) 지역별고용조사의 '협조자'인 통장, 이장, 아파트 동대표, 연립 운영회장들이 봉사직이지만 일정 봉사료를 고정적으로 받는 경우  
예) 할머니가 가족 중 아기를 돌보고 얼마간의 용돈을 받을 때, 그 금액이 아기를 돌보는 실제 비용 (교통비나 분유값 등)을 초과할 경우
- 자영자나 고용주가 사업을 현재 운영은 하고 있지 않지만 사업장은 유지하고 있음 ⇒ 취업자  
예) 농한기의 농업인구가 밭이나 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일을 하는 경우
- 일정한 사업장(사무실)은 없지만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건물·주택 임대업자나 전문 지식 프리랜서의 경우 ⇒ 취업자  
예) 취미가 아닌 수입을 목적으로 소설가가 소설을 쓰는 경우
- 학생이나 수련생이 일정 수입을 고정적으로 보수처럼 받는 경우 ⇒ 취업자  
예) 박사과정의 사람이 일정 연구비를 고정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 병역특례자로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 ⇒ 취업자

## 종사상 지위

-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등과 같이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또는 지위상태를 말함
  - 임금근로자: 자신의 근로에 대해 임금, 봉급, 일당, 현물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일한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하며, 통상적으로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로 구분됨



●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 체결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고용계약 미체결자는 정해진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거나 상여금 및 퇴직금 등 각종 수혜를 받는 사람

● 임시근로자

- 임금근로자 중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또는 일정한 고용계약이 없으나 1개월 ~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사업완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사람

●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 하루 단위로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자

-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형태의 근로자를 의미

※ 비임금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임금근로자 여부를 판단하여 임금근로자가 아니라면 비임금근로자로 분류할 것

● 자영업자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예술가, 프리랜서 등 사업체 형태를 갖추지 않고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사업주 또는 무급가족종사자로만 구성되어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함(유급근로자가 없음)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 무급가족종사자

동일 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나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함

📌 산업 및 직업분류(조사 사례집 참고)

- 산업분류: 취업자 또는 1년 이내 취업자였던 사람이 근무하던 사업체의 주된 산업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함
- 직업분류: 취업자 또는 1년 이내 취업자였던 사람이 가졌던 직업을 말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일의 형태와 일을 수행하는 능력을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을 말하며,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함

## II

# 조사항목별 작성 요령

## I 인적 사항

※ 만 15세 이상만 기입합니다.(2005. 4. 15. 기준)

<b>1</b> 성명 ※ 조사담당자 기입 <input type="text"/> (가구원명부상 번호)	<b>2</b> 가구주와의 관계 <table border="0"> <tr> <td>1 가구주</td> <td>6 부모(장인, 장모)</td> </tr> <tr> <td>2 배우자</td> <td>7 조부모</td> </tr> <tr> <td>3 미혼자녀</td> <td>8 미혼형제·자매</td> </tr> <tr> <td>4 기혼자녀(배우자)</td> <td>9 기타</td> </tr> <tr> <td>5 손자녀(배우자)</td> <td></td> </tr> </table>	1 가구주	6 부모(장인, 장모)	2 배우자	7 조부모	3 미혼자녀	8 미혼형제·자매	4 기혼자녀(배우자)	9 기타	5 손자녀(배우자)		<b>3</b> 성별 <table border="0"> <tr> <td>1 남자</td> </tr> <tr> <td>2 여자</td> </tr> </table>	1 남자	2 여자	<b>4</b> 생년월일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일
1 가구주	6 부모(장인, 장모)														
2 배우자	7 조부모														
3 미혼자녀	8 미혼형제·자매														
4 기혼자녀(배우자)	9 기타														
5 손자녀(배우자)															
1 남자															
2 여자															

### 1 성명

➔ 조사대상 가구원의 성명을 기입

- 가구원명부상 번호(  ) 는 조사담당자가 기입하며, 조사대상 가구원의 조사표 작성 순서대로 기입(가구주,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순)

### 2 가구주와의 관계

➔ 가구주를 기준으로 어떠한 관계인지를 기입

- 기혼자녀의 배우자는 '4 기혼자녀(배우자)'에 표시
- '5 손자녀(배우자)'는 기혼, 미혼에 관계없이 해당됨
- 「기혼 형제·자매 및 동거인」은 '9 기타'에 포함
- ※ 선택형 문항의 표시방법은 'V'하지 않고, 「○」으로 표시

### 📖 주의사항

- **가구주**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가구를 대표하고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생계책임자를 의미
- 「생계책임자」는 가구원 중에서 소득이 제일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사람
- 세대주가 전혀 소득이 없이 단순히 타 가구원의 소득을 수령하여 지출하는 경우  
⇒ 가구주로 처리하면 안 됨



### 3 성별

➡ 이름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현지에서 성별을 질문하여 기입

### 4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조사

### 5 교육정도

5 교육정도	0 안받았음(무학)	수학여부	1 졸업 2 재학 3 중퇴 4 휴학 5 수료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		
	① 인문계열 ② 예술·체육계열 ③ 상농공수산계열 등		
	4 전문대 (초급대, 2년·3년제 대학 포함)		
	5 대학교(4년제 이상 대학 포함) →	① 교육 ② 예술 ③ 인문학 ④ 사회과학, 언론·정보학 ⑤ 경영, 행정·법학 ⑥ 자연과학, 수학·통계학 전공학과명 _____ (학)과	
	6 대학원(석사)	⑦ 정보통신기술 ⑧ 공학, 제조·건설 ⑨ 농림어업·수의학 ⑩ 보건 ⑪ 복지 ⑫ 서비스	
	7 대학원(박사)		

➡ 정규교육과정 또는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학력을 묻는 항목으로 학제가 다른 외국인은 교육 받은 기간 등을 참고하여 학력을 기재

#### 📖 주의사항

기능훈련, 직업훈련, 입시학원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 학력

- 조사대상기간 현재의 학력을 기준으로 작성

#### 🗨 사례

- 4년제 대학졸업 이후, 다시 전문대학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경우  
⇒ '4 전문대'에 표시하고, 전공계열도 현재 전공학과를 기준으로 작성, 수학 여부도 재학으로 표시
- 특수학교의 경우 교육대상자의 수준에 따라 받는 교육과정(초·중·고등학교)에 따라 구분하며, 특히 고등학교인 경우 상농공수산계열로 분류

- 학교에 다니지 않은 사람은 '0 안받았음(무학)'으로 표시
- 공민학교는 초등학교 과정이고, 고등공민학교는 중학교에 해당하며 과거 학제인 경우에는 현재 학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기입  
예) 과거 5년제 중학 졸업 ⇒ 고등학교 인문계열 졸업으로 표시
- 2년, 3년제 대학은 '4 전문대'에 해당
- 박사학위과정에 있는 경우는 '7 대학원(박사)'재학으로 표시

### 참고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사이버대학 명단(21개)

- 경희사이버대학교, 국제사이버대학교, 대구사이버대학교, 부산디지털대학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열린사이버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고려사이버대학교, 송실사이버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 화신사이버대학교,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건양사이버대학교, 영남사이버대학교, 한국복지사이버대학, 영진사이버대학교, 세계사이버대학

### 계열

- 학력이 고등학교인 경우 계열의 ① 인문계열 ~ ③ 상농공수산계열등 중 표시

### 참고

- 인문계고교(문과, 이과 포함)는 '① 인문계열'
- 구 사범(고등)학교, 고졸 검정고시는 '③ 상농공수산계열 등'에 해당

### 교육영역

- 전문대 이상의 학력인 경우 교육영역의 ① 교육 ~ ⑫ 서비스 중 표시
- p. 43 **교육영역별 학과** 참조
  - ※ 나라통계시스템의 조사표 입력 창에서 **학과명**으로 검색하면 교육영역 선택 가능
  - \* 전공학과별 교육영역은 응답자의 졸업 당시 기준임
  - \* 학과는 명확한 학과명을 질문하여 정확하게 기입

### 수학여부

- 졸업, 재학, 중퇴, 휴학, 수료의 해당사항에 기입
- ① 졸업은 정규과정의 학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경우
- ② 재학은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 ③ 중퇴는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 ④ 휴학은 군입대, 해외연수, 건강문제 등으로 학업을 잠시 중단하였으나, 향후 학교를 다닐 예정인 경우
- ⑤ 수료는 정규과정의 학업을 완료했으나 졸업에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참고** 교육영역별 학과(전문대 이상)

- **교육**
  - 교육학, 보육을 포함한 유아교육, 전공과목 없는 교사교육, 전공과목 있는 교사교육
- **예술**
  - 시청각 기술 및 미디어 제작, 패션 디자인, 인테리어 및 산업 디자인, 미술, 공예, 음악 및 공연예술
- **인문학**
  - 종교 및 신학, 역사 및 고고학, 철학 및 윤리학, 언어 습득, 문학 및 언어학
- **사회과학, 언론 및 정보학**
  - 경제학, 정치학 및 시민학, 심리학, 사회학 및 문화연구, 언론 및 보도, 문헌정보학 및 기록학
- **경영, 행정 및 법학**
  - 회계 및 세무, 재무, 금융 및 보험, 경영, 행정, 마케팅 및 광고, 비서 및 사무, 무역 및 매매, 법
- **자연과학, 수학 및 통계학**
  - 생물학, 생화학, 환경 과학, 자연환경 및 야생생물, 화학, 지구 과학, 물리학, 수학, 통계학
- **정보통신기술**
  - 컴퓨터 활용,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설계·운영, 소프트웨어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분석
- **공학, 제조 및 건설**
  - 화학공학 및 공정, 환경보호 기술, 전기 및 에너지, 전자 및 자동화, 기계 및 금속,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식품 가공, 재료, (유리, 종이, 플라스틱 및 목재), 섬유(의류, 신발 및 가죽), 자원 채굴 및 추출, 건축 및 도시 설계, 건설 및 토목공학
- **농림어업 및 수의학**
  - 작물 및 축산, 원예, 임업, 어업, 수의학
- **보건**
  - 치의학, 의학, 간호 및 조산, 의료진단 및 치료기술, 치료요법 및 재활, 약학, 한의학 및 대체 의학·치료요법
- **복지**
  - 노인 및 성인 장애인 돌봄, 보육 및 아동·청소년 서비스, 사회복지 및 상담
- **서비스**
  - 생활 서비스, 이·미용 서비스, 숙박, 외식 및 조리 서비스, 스포츠, 여행, 관광 및 여가, 공중위생, 산업보건 및 안전, 군사 및 국방, 경호 및 경비, 운송 서비스

※ 한국표준학과분류에 따른 학과(전공)분류

※ 학과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지방통계청, 사무소별로 배부한 별도 파일 참조

## 6 혼인상태

### 6 혼인상태

- 1 미 혼
- 2 유배우
- 3 사 별
- 4 이 혼

➔ 주민등록과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현재 혼인상태를 말하며, 조사 시 연령과 혼인상태를 점검하여 이상 여부를 체크할 것

– 미성년자가 「2 유배우」~「4 이혼」에 응답한 경우 재확인

#### 1 미혼

– 혼인 경험이 없는 사람

#### 2 유배우

–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

※ 사실혼 관계 및 배우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포함

#### 3 사별

– 배우자 중 한쪽이 사망하여 현재 혼자 살고 있는 사람

#### 4 이혼

– 배우자와 서로 헤어져 현재 혼자 살고 있는 사람

– 이혼신고는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재결합이 예상되지 않는 사실상의 이혼상태에 있는 별거도 이혼으로 간주함

### 사례

- 광복 전 또는 한국전쟁 당시 배우자가 납치 또는 실종된 사람은 사별로 간주  
⇒ 사망신고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대로 기입
-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가 아이를 입양한 상태이면 혼인상태는 사실대로 미혼으로 조사  
⇒ 동거 등 사실혼 관계가 없는 미혼인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경우도 혼인상태는 미혼으로 처리



## II 일에 관한 사항

「조사대상주간」은 2020. 4. 12.(일) ~ 4. 18.(토)을 말합니다.

### 7 자신의 수입 있는 일

7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였습니까?

1 예 → 10번으로                      2 아니오

→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파악하는 문항

- 「조사대상주간」: 2020. 4. 12.(일) ~ 4. 18.(토)
- 임금을 받거나 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농장)의 이윤을 얻기 위해 1시간 이상 일했던 사람은 「1 예」에 해당함
  - ☞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농장)에서 무급으로 일한 사람은 「8 무급가족종사자」로 이동
  - ☞ 가정주부, 학생, 장애인, 연로자라고 해서 전혀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됨
  - ☞ p.46 참고 「일하였음」의 정의 를 반드시 확인하여 조사
- ※ 일반적으로 취업자라고하면 대기업에 다니거나 자기사업을 하면서 주 5일이상 근무를 하는 사람을 떠올리기 쉬운데, ILO 기준에 따르면 근로형태를 가리지 않고 수입을 목적으로 1주간 1시간 이상 일했다면 모두 취업자라고 정의하고 있음

### 8 가족의 무급일

8 조사대상주간에 함께 사는 가족의 사업체 또는 농장 등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1시간 이상 일하였습니까?

1 예 → 10번으로                      2 아니오

- 「8 무급가족종사자」는 자신이 아닌, 함께 사는 가족의 사업체 또는 농장 등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1시간 이상 일했던 사람을 파악함
  - 자가사용 또는 자기소비 만을 위한 일은 「7 일하였음」과 「8 무급가족종사자」문항에서 「2 아니오」에 해당됨(예: 자기집 짓기, 텃밭 가꾸기 등)

**참고 '일하였음'의 정의**

## ● '일하였음'이란?

- 임금이나 이윤을 목적으로 일한 사람과 가족(동일 가구 내에 거주하는 혈연, 혼인 또는 입양에 의한 가족 관계)이 경영하는 사업체 또는 농장 등에서 무보수로 일한 사람
  - 무급으로 동일 가구 내 비혈연 가구원의 일을 하거나 혈연관계라 하더라도 생활근거를 달리하는 가구원의 일을 돕는 것은 무급가족일로 볼 수 없으므로 활동상태를 다시 확인

## ● '일하였음'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일한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식사, 주거 또는 곡물제공)을 받는 경우
- 원재료를 제공한 사업체가 마련한 장소에서 작업을 행하여 일한 분량대로 돈을 받는 일의 경우
- 원재료를 제공받아 개인의 가정에서 가공활동을 하고 완료한 일의 분량에 따라 돈을 받는 일의 경우
- 자기 자신의 사업장이나 농장을 가지고 이윤을 목적으로 일을 한 경우 또는 전문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수료를 받고 일하는 경우
  - 예) 하숙운영, 미장원 운영, 법률사무소 운영, 농사짓는 일, 양계장 운영 및 행상이나 노점상, 예술가가 예술활동을 하는 일 등
- 소득의 적자 여부를 불문하고 조사대상주간에 실질적인 소득을 올리지는 못했으나 계속 사업체를 운영 하는데 시간을 보낸 경우
- 농림어업 사업체를 가진 사람이 파종, 비료살포, 살균, 어획활동 등 실질적인 농림어업 활동을 하지 못했으나 농림어업 준비, 농기구 손질, 수선 등으로 시간을 보낸 경우
- 서로 노동력을 교환하는 형식의 활동인 품앗이(주로 농가에서 이루어짐)

## ● '일하였음'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비생산적인 활동(예: 도박, 매춘 등)
- 법률에 의한 강제노역 및 봉사활동
- 경마, 경륜, 증권, 선물 등 투자활동

## ※ 자영업을 준비하는 자의 활동상태 구분 예시

- 일하였음: 자기 사업장의 확보로 개업을 위한 물건 주문, 물건을 진열하는 행위 등
- 구직활동: 사업계획 확정 후 사업장을 물색하는 경우
  - 사업계획 확정 후 필요한 자재 구입이나 자금 확보하는 경우
  - 사업장 인허가 취득 준비 등 허가 신청 후 영업을 기다리는 경우 등



## 9 일시휴직 여부 및 이유

### 9 조사대상주간에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직장(일)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1 있었음

2 없었음 → 20번으로

#### 9-1. 조사대상주간에 일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일시적 병, 사고
- ② 휴가·연가
- ③ 교육·훈련
- ④ 육 아
- ⑤ 가족적 이유
- ⑥ 노사분규
- ⑦ 사업부진·조업중단
- ⑧ 기 타 ( ) → 20번으로

→ 12번으로

→ 20번으로

→ 「7 일하였음」과 「8 무급가족종사자」에서 파악된 취업자 외에도 일시휴직자에 해당되는 사람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

- 「8 무급가족종사자」의 「2 아니오」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확인함

☞ 「9-1. 일시휴직 사유「①~⑦」에 해당되는 사람만 일시휴직자임

- 조사대상주간에 일시적 이유(자신이나 가족의 병 등)로 직장 또는 자기가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

☞ 일시휴직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직장에 복귀 가능해야 함

☞ 노동쟁의 때문에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는 사람도 포함

- 유급휴직자는 ‘유급’자체가 복귀가 확실한 것으로 간주되어 휴직기간에 관계없이 일시휴직자로 처리함

☞ 무급휴직자의 경우 복귀가 확실하면 일시휴직으로 처리하지만, 무급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될 때 일시휴직자로 보지 않음

※ 무급가족종사자는 복귀할 직장이 인정되지 않아 일시휴직자가 될 수 없음

#### ① 일시적 병, 사고

- 자기의 병 및 사고 때문에 일정기간 일을 하지 못한 경우

※ 몸이 아플, 산재사고, 건강이유 등

#### ② 휴가·연가

- 휴가(연가), 연차, 월차 등 휴식을 위해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 학교·학원·유치원 선생님이 방학으로 일을 하지 않은 경우 등

## ③ 교육·훈련

- 직장교육훈련, 예비군훈련, 교육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한 경우

## ④ 육아

- 취학 전 아동돌봄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한 경우

## ⑤ 가족적 이유

- 집안의 경조사, 가족의 병 및 사고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한 경우

## ⑥ 노사분규

- 파업중에 있는 사람으로 파업에 참가한 사람 뿐만 아니라, 파업 때문에 출근하지 못하는 사람도 포함

## ⑦ 사업부진·조업중단

- 일기불순, 기계고장, 원료부족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러한 요인들이 해소되면 곧바로 작업에 들어갈 것이 확실한 경우 또는 일시적으로 일거리가 없는 경우

## ⑧ 기타( )

- '⑧기타'로 분류되는 경우 일시휴직자로 보지 않으므로 일을 하지 않은 이유가 ① ~ ⑦의 예시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지 유의하여야 함('⑧'로 분류되면 취업자로 분류되지 않음)

- 계절사업체, 직장변경, 회사부도, 직장불만 등으로 직장복귀가 불확실한 경우

※ 기타로 분류되는 경우 반드시 사유를 기입해야 함

 사례

## ● 일시휴직이 아닌 경우

- 기업의 경영사정으로 대기발령을 받았으나, 재발령 가능성이 희박하여 복귀가 불확실한 경우

## ● 기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조사대상주간에 일하지 않았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복귀하여 일할 수 있는 경우(① ~ ⑦에서 선택)

• 몸이 아픔, 산재사고, 건강이유 등(①)

• 쉬려고, 휴식, 학교·학원·유치원 선생님이 방학이어서 일을 하지 않은 경우 등(②)

• 회사이전, 일시적 경기침체로 회사의 일거리가 없는 경우, 회사건물 신축·증축 등(⑦)



## 참고 직장의 정의

### ● 직장이란?

- 직장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을 말하지만, 계절적인 근로자의 경우 조사대상 주간이 해당계절에 속하는 경우에만 해당

조사대상주간에 일하지 않은 무급가족종사자, 일용근로자는 직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  
(예: 가사도우미, 운전사, 건설일용근로자 등)

직장유무는 일시휴직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

직장이 있지만 일하지 않은 경우에만 일시휴직으로 봄

### <직장이 있었음으로 간주하는 경우>

- 토요일, 일요일에만 규칙적으로 돕는 소매활동
- 가정에 고용되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예: 가사도우미 등)
- 성수기의 계절적 취업자
- 일감을 가져다 자기 집에서 샅일하고 있는 경우
- 사업체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조사대상기간에 일은 못하였지만 매월 단위로 볼 때 계속 일해 왔으며(취업의 계속성), 앞으로도(30일 이내에) 계속하여 일할 것이 확실한 경우

### <직장이 있었음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 직업소개소에 등록하고 호출되기를 기다리는 일용근로자  
(예: 가사도우미, 일용노무자 등)
- 비수기의 계절적 취업자  
(예: 스키강사, 수상안전요원 등)
- 무급가족종사자로 조사대상주간에 일을 하지 않는 사람  
※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는 일시휴직이 나올 수 없음
- 직장의 복귀가 불확실한 경우

## 10 주업과 부업

### 10 조사대상주간에 주된 일 이외에 다른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1 있었음

2 없었음

➡ 두 가지 이상의 일 즉, 주업과 부업(two jobs)을 함께 수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

- 주된 일(주업): 수입을 목적으로 주로 하는 일로서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시간이 가장 많은 일

예 1) 주부가 가사일을 하면서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 아르바이트를 주된 일로 판단, '10 부업여부'는 '2 없었음'에 기입

예 2) 학생이 통학하면서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 아르바이트가 주된 일이며, '10 부업여부'는 '2 없었음'에 기입

- 다른 일(부업): 주업 이외에 따로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일

### 📖 주의사항

- '1 있었음'에 응답하는 경우는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실제로 취업시간이 있는 경우만 인정되므로 일시휴직자는 해당되지 않음
- 비임금근로 형태로만 2가지 이상 일한 경우 부업으로 인정되지 않음  
⇒ 여러 가지 일 중 적어도 1개 이상 임금근로자로서 일을 하는 경우에만 주업, 부업을 구분함
- 매일 일하는 장소 또는 고용주가 바뀌는 경우 2가지 이상의 일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않음  
(예)가사도우미, 건설공사현장의 일용근로자 등

## 11 취업시간

### 11 조사대상주간에 실제 몇 시간 일하셧습니까?

1 주된 일:  시간

2 다른 일:  시간

3 총 계:  시간

① 1~17시간 무급가족종사자 → 20번으로

② 1~35시간

③ 36시간 이상

→ 12번으로

(※ 18시간 이상 무급가족종사자는 ②또는 ③으로 ○표시)



### ➡ 조사대상주간에 실제로 일한 시간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

– 조사대상주간(일주일) 동안 일한 시간들을 합산하여 기입

※ 취업시간 결정기준

- 수입있는 일을 위해 근로한 시간
- 정규근무시간 이외 초과근무시간도 포함
- 함께 사는 가족이 경영하는 농업, 상점 등의 일을 도운 시간

### 📖 주의사항

- 조사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록하고, 시간은 30분 단위로 반올림
- 임금근로자는 근로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지 못하였다더라도 자기직무와 관련해서 일한 시간을 기입
- 비임금근로자는 자기·가족사업을 위해 보낸 시간을 말하며 실질적인 거래는 없어도 거래를 위해 사업장 밖에서 보낸 시간도 포함

### 💬 사례

#### ● 취업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

- 식사시간 및 사적 용무를 본 시간
- 무보수 봉사과 같은 활동에 종사한 시간
- 통근소요시간

#### ●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

- 1 ~ 17시간: '① 1 ~ 17시간 미만 무급가족종사자'에 표시
- 18 ~ 35시간: '② 1 ~ 35시간'에 표시
- 36시간 이상: '③ 36시간 이상'에 표시

#### ● 조사대상주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 사람

- 기존 일 존재유무에 상관없이 새로운 일에 대한 1주간 취업시간을 기입  
⇒ 조사대상 1주간의 첫날부터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중간에 시작한 취업자의 경우에 해당

#### ● 조사대상주간에 일이 종료된 사람

- 종료되기 전까지 조사대상 주간에 일한 시간을 기입

## 참고 취업시간의 판단

### ● 무급가족종사자의 취업시간 판단예시

– 무급가족 일만 한 경우

- 종전대로 취업시간(18시간 기준)을 기준으로 취업자로 조사하거나 20번 구직활동 여부를 조사(취업시간을 주업에만 기입)

– 무급가족일과 수입 있는 일을 같이 한 경우

#### 〈 무급가족종사자의 근로시간이 18시간 이상인 경우 〉

- 수입 있는 일을 한 근로시간 < 무급가족종사 근로시간  
⇒ 무급가족종사 근로시간을 주된일, 수입 있는 일은 다른일로 기입
- 수입 있는 일을 한 근로시간 > 무급가족종사 근로시간  
⇒ 수입을 위한 근로시간을 주된일, 무급가족종사자 근로시간을 다른일로 기입

#### 〈 무급가족종사자의 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경우 〉

⇒ 수입 있는 일을 주된일로 기입하고, 다른일은 0시간으로 기입

예 1) 수입 있는 일 30시간, 무급가족일 10시간: 주된일 30시간, 다른일 0시간

예 2) 수입 있는 일 30시간, 무급가족일 20시간: 주된일 30시간, 다른일 20시간

예 3) 무급가족일 30시간, 수입 있는 일 10시간: 주된일 30시간, 다른일 10시간

예 4) 수입 있는 일 5시간, 무급가족일 15시간: 주된일 5시간, 다른일 0시간

※ 무급가족일이 18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취업자로 간주

### ● 임금근로자이면서 비임금근로자일 경우는 조사대상기간에 취업시간이 많은 일을 주된 일에 작성

예) 농사일을 하면서 이장일도 함께 하는 경우, 기간제사무원으로 출근하면서 개인 상점을 운영하는 경우

### ● 비임금근로자로 2가지 이상 일을 하는 경우는 주된일과 다른일을 구분하지 않고 주된 일로만 기입

– 주된일과 다른일 중 적어도 1개 이상의 일을 임금근로자로서 수행하는 경우에만 주된일과 다른일을 구분하여 판단함에 주의

예) 자영업자가 농업 40시간, 어업 10시간을 일한 경우: 주된일 50시간

### ● 고정된 직장이 없이 매일 일하는 장소나 일의 종류가 달라지는 경우

– 두 가지 이상의 일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않으며 일한 시간을 모두 합하여 주된일로 기입

예) 가사 도우미, 건설공사 현장의 일용근로자 등

### ● 고정된 직장이 있으나 매일 수행하는 일의 종류가 달라지는 경우

– 일의 내용에 상관없이 1주간 일한 시간을 모두 합하여 주된일에 기입



## 12 산업

**12 조사대상주간에 어디에서 일하였습니까?** ※일시휴직자의 경우 소속 직장(사업체)

● 사업체(직장)명 \_\_\_\_\_

● 사업체(직장)가 주로 하는 일 \_\_\_\_\_

● 사업체(직장) 소재지 \_\_\_\_\_ (시, 도) \_\_\_\_\_ (시, 군, 구)

※ 조사관리자 기입

※ 조사담당자 기입

---

※ 조사대상주간의 직장(사업체)의 종사자수는 얼마나 됩니까?

1 1~4명    2 5~9명    3 10~29명    4 30~99명

5 100~299명    6 300~499명    7 500명 이상

➡ 조사대상기간에 종사한 사업체(직장)명과 사업체(직장)가 주로 하는 일 및 사업체 소재지를 각각 기입함

### ▣ 사업체(직장)명

- 임금근로자는 직장명을 최하단위까지 구체적으로 기입  
예) 서울지방병무청, 포스코 광양제철소, 해성전자 천안대리점  
• 갑천초 → 갑천초등학교, 대성고 → 대성고등학교
- 여러 곳에서 일하거나 매일 다른 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장소 또는 일한 곳의 특징을 기입  
예) 가사도우미: 남의 가정에서, 유리창 닦이: 남의 건물에서
- 비임금근로자는 점포명이나 사업체명을 기입
  -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가 점포명이나 사업체명이 없는 경우  
⇒ 「자기사업」 또는 「가족사업」이라고 기입
  - ※ 산업분류코드는 산업세분류(4자리)까지 조사관리자가 기입
- 인력공급업(산업분류:7512) 취업자의 경우
  - 사업체명은 인력공급업체명 기입
  - 사업체가 주로하는 일은 인력공급업체가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 내용을 기입
  - 사업체 소재지 인력공급업체의 소재지가 아니라 조사대상주간에 실제로 근무한 장소를 기입  
예) 수원시 ○○인력업체에서 화성에 위치한 △△아파트 건설현장으로 파견나가 근무하는 경우  
⇒ 사업체명: ○○인력, 주로하는일: 인력공급업/ 인력파견, 소재지: 화성

## ■ 사업체(직장)가 주로 하는 일

- 사업체(직장) 내에서 조사대상자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 사업체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알 수 있도록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입
  - ※ 산업분류 책자를 참고하여 산업분류 명칭을 기재하지 말고, 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산업활동 내용을 기입
    - 예) • 실을 구입하여 원단을 직조함
    - 판매업의 경우 도매 또는 소매를 반드시 구분해야 하며, 주로 판매하는 상품명도 기입해야 함

## 참고 사업체(직장)가 주로 하는 일

-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기관명만으로 산업을 구분할 수 있으나, 민간사업체의 경우 사업체명으로 산업을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 활동을 명시

예) ◆ 사업체(직장)명 · 새한금속 전주공장 · 신창전기 구미공장 · 온누리여행사 강남지점	◆ 사업체(직장)가 주로 하는 일 · 핸드폰 부품도금 · 자동차 키박스 제조 · 국내여행상품 판매
--	---

- 사업체가 주로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기입(포괄적으로 기입하면 안 됨)

- 상자 제조업(×) ⇒ 종이상자 제조, 나무상자 제조, 금속상자 제조(○)
- 섬유제품 제조, 섬유가공(×) ⇒ 실제조, 원단편조, 양복제조, 커튼제조(○)
- 화학제품 제조(×) ⇒ 벤젠제조, 실리카겔제조, 알루미늄산화물제조(○)

- 여러 가지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

- 기업에는 여러 사업장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런 경우 응답자가 속한 사업장의 산업활동을 기입
- 동일 사업장 내에서 여러 가지 산업활동이 수행되는 경우에는 가장 주된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기입

-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구분

- 사업체의 직접 생산한 제품을 다른 제조업체나 도·소매업체에 파는 경우 그 사업체는 제조업으로 분류됨
- 제조업체의 본사나 공장에서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 있는 판매·영업소는 판매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분류 기입
  - 도매업은 상품을 구입하여 소매업체 또는 다른 도매업체에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 소매업은 상품을 구입하여 일반소비자(가정)에게 소비용 상품을 파는 경우



### ▶ 사업체(직장) 소재지

- 근무지 기준 통계를 생산하는 중요한 조사항목임
  - 사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시·도와 시·군·구의 명칭을 기입
  - 시·군·구 부호(    ) 조사담당자가 기입
- ※ p.105 **부록 8 행정구역 코드표** 참조

### 📖 참고 사업체(직장) 소재지

#### ● 소속사업체가 아닌 실제로 일한 곳(사업체)을 기준으로 작성

- ※ 취업자의 실제 근무지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임
- 소속된 사업체 소재지와 실제 근무한 장소가 다른 경우
  - 실제 근무한 장소를 기준으로 작성
  - 예) 소속사업체 소재지가 서울이고, 일정기간 인천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는 파견 근무하는 인천으로 조사
- 근무하는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 조사대상기간에 주로 활동(근무)한 장소를 기입
  - 조사대상기간에 주로 활동한 장소가 없으면 최근에 가장 많이 활동한 장소를 기입

### ▶ 종사자 규모: 조사대상기간에 직장(사업체)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의 규모를 파악하는 문항

- 임금근로자: 자기가 속한 직장의 전체 종사자수를 파악
  - 본사(점) 직원인 경우: 본사 근무하는 직원 수를 기입
  - 지사(점) 직원인 경우: 해당지점 근무하는 직원 수만 기입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주를 포함한 자기 사업체 내의 전체 종사자 수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자영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종사자 수

### 🗨 사례

- 남의 집에서 혼자서 일하는 육체적 단순노무, 가사서비스 등과 같은 임금근로자(일용)로 분류된 경우  
⇒ 자신만 종사자로 파악하여 '① 1 ~ 4인'에 기입
- 공공근로인 경우에 사업체 종사자수는 어디에서 일을 하는가에 따라 판단  
⇒ 공공근로요원이 채용된 공공기관(동읍면 또는 시·군·구청)에서 일하는 경우는 공공기관의 종사자수를 포함하여 조사하고, 별도의 장소(외부환경 등)에서 일하는 경우는 채용된 공공근로 인원수만을 대상으로 조사함

### 📖 주의사항

- 개인사업체의 경우(주인 포함) 종사자수를 묻게 되면 주인을 제외한 종업원 수를 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주인 포함 여부를 확인
- 종업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인지 개인 사업체인지 재확인

## 13 직업

### 13 조사대상주간에 직장(사업체)에서 무슨 일을 하였습니다니까?

- 내가 한 일 \_\_\_\_\_
- 직명(직위) \_\_\_\_\_
- 부 서 명 \_\_\_\_\_

※ 조사관리자 기입

➡ 직장(사업체)에서 조사대상자가 어떠한 종류의 일을 하고 있는지 또는 수행하여야 할 임무에 대하여 묻는 항목

#### ▶ 내가 한 일

- 질문할 때 응답자에게 직업이란 말을 가능한 사용하지 말고 직장(회사, 공장 등)에서 응답자가 하는 일, 맡은 업무가 무엇인지 내용을 물어서 기입
- 직위나 직명 또는 고용상 지위, 직장 특성 등을 쓰지 않아야 함

### 📖 주의사항

'하는 일'에 공장장, 직원, 공무원, 대표, 자영업자, 사장, 학생 지도, 회사원 등은 하는 일로 부적절

#### ▶ 직명(직위)

- 직위는 조사대상자의 직업을 명확히 하고 전문성, 권한 등을 판단하는 요소이므로 단순히 계장, 과장, 실장 등으로 기입하면 안 되고, 경리계장(6급), 책임연구원, 간호조무사 등 자세히 기입
- 직업분류코드는 직업 세분류(4자리)까지 조사관리자가 기입

#### ▶ 부서명

- 부서명이 없는 경우는 직업분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기입



### 참고 분야별 직업 조사 시 유의사항

#### ● 건설: 전문 분야와 하는 일 명기

- 전문분야: 건물설비설치, 전기/통신, 실내건축, 건축 마무리 등
- (예1) 집 짓기(×) ⇒ 벽돌 운반, 시멘트 칠하기, 창호 설치(○)
- (예2) 설비공(×) ⇒ 냉·난방설비, 전기설비(○)

#### ● 제조: '무엇'으로/을 '어떻게'로 작성

- (예1) 기계 제조(×) ⇒ 자동차의 엔진을 제조(○)
- (예2) 전동기 검사원(×) ⇒ 전동기가 불량인지 눈으로 검수(○)
- (예3) 옷 만들기(×) ⇒ 한복을 수작업으로 만드는 일(○)
- (예4) 포장 하는 일(×) ⇒ 기계로 화장품을 포장하는 일(○)

#### ● 도소매: 판매 상품과 판매 형태를 명기

- (상점 경영) 점주(사장님) 또는 일선 관리자(점장, 슝마스터) 여부 명시
- (판매원) 판매상품과 형태를 명기: 상점 판매, 대여, 온라인, 행사, 방문 등
- (단순노무) 상품진열, 정리만 전담

#### ● 음식점: 주방장, 조리사, 조리보조는 대분류가 다르므로 분류에 유의

- (포괄 업무) 홀서빙, 주방보조, 카운터(계산)을 함께 하는 경우 업무 중 주된 업무 하나 기입
- (음식점 사장) 사장도 운영관리만 하는지, 조리/계산 등 현업에 직접 참여하는지 조사해 기입
- (예) 음식점 사장(×) ⇒ 음식점 정산 담당(캐셔), 조리(○)

#### ● 관리업무: '무엇'을 관리하는지 작성

- (예1) 학교 관리(×) ⇒ 대학교 시설물 수리(○)
- (예2) 현장 관리(×) ⇒ 건설인부 채용 및 일당 지급(○)
- (예3) 생산 관리(×) ⇒ 생산라인 기계 유지보수 관리(○)
- (예4) 창고 관리(×) ⇒ 창고 재고파악 및 부족품 주문(○)
- (예5) 시설 관리(×) ⇒ 수영장 설비 상태 확인 후 교체(○)

### 참고 산업 및 직업코드 기입시 유의사항

#### - 산업분류

- 직업과 별개로 사업체가 하는 여러 가지 일 중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  
 <예> 방앗간을 운영하면서 지인 과수원에서 사과를 판매하는 경우 ⇒ 곡물 가공품 제조  
 ※ 도·소매를 모두 겸할 경우, 비중이 큰 산업으로 기입

#### - 직업분류

- 주된업무, 최상급직능, 생산업무 우선으로 분류  
 <예> 1. (주된업무) 의사가 대학에서 주1회 강의를 하는 경우 → 의사  
 2. (최상급직능) 분식점에서 조리와 배달을 같이 함 → 조리사  
 3. (생산업무) 떡집에서 떡을 제조도 하고 판매도 하는 경우 → 떡제조원

**참고** 산업내용 및 직업내용 기입 예시

● 산업내용

구분	잘못된 조사사례		잘된 조사사례	
	사업체명	사업체가 주로 하는 일	사업체명	사업체가 주로 하는 일
1	자 기 집	농 사	나의 논	논농사(논벼)
2	자 기 집	밭농사	나의 밭(하우스)	하우스에서 토마토재배
3	○○상회	음식료품 도매	○○상회	과일 · 채소도매
4	○○건설	건설업	○○건설	토지조성공사 및 정리사업
5	○○식당	음식점업	○○식당	한식 음식점업
6	○○농협	금융업	○○농협 단위조합	신용조합
7	○○택배	우편배달	○○택배 둔산영업소	우편물운송 및 배달서비스
8	○○병원	치 료	○○병원	애완동물치료 및 수의서비스

● 직업내용

구분	잘못된 조사사례		잘된 조사사례	
	내가 한 일	직명(직위)	내가 한 일	직명(직위)
1	경 리	계 장	경리사무	경리계장(6급)
2	식당주방	없 음	식당에서 주방설거지	주방보조
3	치 료	의 사	치아치료	치과 의사
4	감 별	감 별 사	병아리 암수 감별	병아리 감별사
5	수 리	직 원	카메라 수리	카메라 수리원
6	판 매	직 원	여성의류 소매	판 매 원
7	판 매	외 판 원	책 판 매	방문 외판원
8	하 역	운 반 원	선박화물 하역	부두 하역원



## 14 종사상 지위

### 14 조사대상주간의 직장(일)에서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 임금근로자
  - 1 상용근로자
  - 2 임시근로자
  - 3 일용근로자
- 비임금근로자
  - 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6 무급가족종사자

#### ☞ 실제로 일하고 있는 종사자의 지위를 파악

##### ▶ 임금근로자(상용, 임시, 일용 근로자) 구분 기준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	상용근로자	정해진 채용절차에 의하여 입사한 사람으로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을 적용 받는 자 또는 퇴직금 및 상여금 등 각종 수당 수혜자는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1년 미만	임시근로자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으나 일정한 사업완료의 필요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도 고용계약 기간에 준하여 판단함
  - 사업완료의 필요기간에 따라 1년 이상은 상용근로자, 1년 미만은 임시근로자로 각각 구분
- 동일업체에 1년 이상 근무(계약기간이 아님)한 경우라도 고용계약이 처음부터 임시 또는 일용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우선하여 분류
  - 예) 당초 8개월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가 계약 만기시점에 7개월 연장한 경우  
→ 채용기간이 1년 3개월이나 상용근로자로 분류하지 않고 임시근로자로 분류
- 대상가구원의 응답내용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계약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분류할 것
- 응답자가 원하는 직장을 구하기 전에 '임시로 다닌다'라고 대답한 경우라도 1년 또는 1개월 이상의 계약여부를 확인

##### ▶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자영업술가, 개인사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말하며,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

#### 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임금을 주는 종업원을 채용하고 있는 사람(자영업자)이 해당

## 📖 주의사항

- 가족종사자를 두고 있는 경우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분류

### 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의 파트너(무급가족종사자 포함)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 개인사업자, 작가 등 예술인, 농·어부, 행상 및 노점상, 프리랜서 등을 말하며, 무급 가족종사자 외에 유급 고용원이 있는 경우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분류

### 6 무급가족종사자

- 자기 가족(동일가구 내)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정한 보수 없이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
  - 동일가구 내 가족이라도 일정한 봉급을 받는 경우는 임금근로자로 분류
  - 가구를 달리하는 가족 또는 친척의 사업체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경우에는 무급가족종사자가 아니며,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임금근로자로 분류

## 📖 참고 종사상 지위 구분

- **선박이나 장비 등에 공동투자하고 어업활동을 하는 어부: 자영업자**
  - 동업자로 보고 자영업자로 분류
- **외판 형태의 일에 종사하는 자**
  - 자본투자 없이 소속 회사로부터 정기적인 보수 또는 실적급을 받는 경우 : 임금근로자로 분류
  - 자기자본을 투자하고 고정된 보수를 지급 받지 않는 경우: 자영업자로 분류
    - ※ 자본의 투자란 독립된 점포 소유, 판매할 물건을 자기자본으로 구입하는 등을 의미함
- **행상, 노점상: 자영업자**
  - 본인의 차로 야채판매, 의류행상 등
- **가내작업: 일용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 일용근로자: 사업체에서 제공한 원료 및 반제품을 받아다가 가정에서 하청작업을 하고 일한 만큼 수수료를 받는 경우
  - 자영업자: 원료 자체를 직접 구입하여 가정에서 작업하는 경우
- **성직자: 임금근로자**
  - 승려, 목사, 신부 등
- **가사종사자: 일용근로자**
  - 가사도우미 등



### 15 현직장 취업시기

15 조사대상주간의 직장(일)은 언제부터 시작하였습니까?

□ □ □ □ 년 □ □ 월

➔ 취업자가 조사대상주간의 직장(일)을 언제부터 시작하였는지 기입

- 예) • 건설노무자의 경우 건설현장이 바뀔 때마다 취업시기가 변동됨  
• 1년 단위로 고용 재계약시에는 '처음 입사한 시기'를 기준으로 기입

### 16 취업여성의 경력단절 경험 여부

16 조사대상주간의 직장(일)을 하기 전에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하다가 그만 둔 적이 있습니까?  
(남자는 3 에 표시)

- 1 예      2 아니오      3 해당없음(남자)

16-1. 일을 그만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결혼                      ② 임신, 출산              ③ 육 아  
④ 자녀의 교육(초등학생)    ⑤ 가족돌봄              ⑥ 기 타 (              )

➔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는 **질문 끝**

➔ 조사대상주간의 직장(일)을 하기 전에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하다가 그만 둔 사유를 파악하는 항목

- 결혼
- 임신, 출산
- 미취학 자녀를 돌보는 일로 인해 직장(일)을 그만 둔 경우
- 초등학생 자녀의 교육
-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병간호

#### 📖 주의사항

여러번 일을 그만둔 적이 있는 경우는 가장 최근 것을 기준으로 작성

## 17 고용계약여부 및 계약기간

### ※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만 작성 ( 17 ~ 19 )

#### 17 조사대상주간의 직장(일)에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였습니까?

- 1 정하였음    2 정하지 않았음(정년제 포함)

##### 17-1. 고용계약기간은 얼마입니까?

- ① 1개월 미만                      ② 1개월~6개월 미만                      ③ 6개월~1년 미만                      ④ 1년  
⑤ 1년 초과~2년                      ⑥ 2년 초과~3년                      ⑦ 3년 초과

➔ 고용될 당시 고용계약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항목

### 📖 주의사항

고용주(사용자)와 근로기간을 구두로 정한(약속 또는 계약) 경우도 '1 정하였음'에 해당

## 18 사회보험 가입 여부

#### 18 조사대상주간 중 다음의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까?

##### 18-1. 국민연금 또는 특수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 ① 직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    ③ 아니오(수급권자 포함)

##### 18-2. 건강보험

- ① 직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    ③ 의료수급권자    ④ 직장가입피부양자    ⑤ 아니오

##### 18-3. 고용보험

-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없음(특수직역연금 가입자)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각 해당 항목별로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작성함

※ 주된 일(주업) 외에 다른 일(부업)에서 가입한 사회보험도 포함하여 조사함

※ 사회보험의 자세한 적용대상 및 제외범위는 p.65~66 **참고 '사회보험'** 참조

#### 18-1 ① 국민연금 직장가입자(포함: 직장이 있는 임의계속가입자)

– 특수직역연금가입자(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 우체국 직원)

– 국민연금에 가입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외국기관포함)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

※ 60세이상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경우 ⇒ 재확인 필요

※ 임의계속가입자의 자세한 사항은 p.67 **참고 '임의계속가입자'** 참조



**18-2** ㉓ 의료수급권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와 피부양자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한다.
  - ①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자
  - ②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가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하지 않는 자

**18-2** ㉔ 직장가입피부양자

- 배우자 등의 『직장가입』에 따른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
  - 예) 식당에 다니는 배우자가 회사 다니는 남편의 『직장가입』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18-2** ㉕ 아니오

- 건강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자만 해당됨

**18-3** ㉓ 해당없음(특수지역연금 가입자)

- 고용보험법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은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 이므로 ‘해당없음’ 항목에 기입
  - 단,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 가능
- 65세 미만 근로자는 직장에서 임금(보수) 지급 시 고용보험료가 공제되므로 이를 확인 하여 가입여부 판단
- 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으로 고용보험을 납부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65세가 넘더라도 고용기간에는 보험료가 부과(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혜택)
  -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나,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사업을 위한 보험료는 부과됨(즉, 실업급여는 미적용, 직업능력개발훈련만 혜택)
- ※ 고용보험 적용여부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거나 고용보험사이트(www.ei.go.kr)에 접속하여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조사표 작성에 참고

**참고**    **사회보험**

● **사회보험제도란?**

- 사회보험제도는 국가 및 사회가 책임을 지고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생활의 위험이나 경제적 불안정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국민생활 여건의 악화요인을 예방하고 제거함으로써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형평과 안정, 그리고 능률을 증대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 1995년 7월부터 고용보험의 실시로 연금보험, 건강보험(의료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 체제가 구축되었다.
- 사회보험 관련 부처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고용노동부가 관여되어 있고, 관리공단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보험관리공단,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조합), 국민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이르는 등 보험별로 목표, 대상집단, 근거법령, 보험운영의 형태, 집행기관이 다원화되어 있다.

구분	대상 위험	관련법	보장유형	도입 연도	관련부처 및 집행기관
국민연금	노령, 장애, 사망	국민연금법	소득보장	1988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관리공단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등은 별도로 연금 운영
건강보험	질병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보장	1977	- 보건복지부 - 2000. 7. 1부터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과 직장조합을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보상법	의료·소득보장	1964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실업	고용보험법	소득보장	1995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2020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조사지침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의료보험)	고용보험
적용 대상 및 제외 범위	<p>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p> <p>• 사업장 가입자 1. <b>당연적용사업장 가입자</b> -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b>&lt;당연적용사업장&gt;</b></p> <p>①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② 주한 외국기관으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p> </div> <p>2. <b>임의적용사업장 가입자</b> -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에 가입한 자 ※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자기가 원하면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음</p> <p>• 지역 가입자 -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됨. - 단, 아래에 해당하는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는 제외</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① 다른 공적연금을 적용받는 자 ② 사업장가입자 ③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④ 별정우체국직원 ⑤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p> </div> <p>-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제외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제외</p> <p>※ <b>적용제외의 근로자</b> -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 법인의 이사 중 소득이 없는 사람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단,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시간강사,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제외</p> <p>※ <b>가입대상 제외자</b>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자 -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 -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p>	<p>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재외국민 및 외국인근로자 포함)</p> <p>• 직장 가입자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b>&lt;직장 가입 적용 제외자&gt;</b></p> <p>① 1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②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 ③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④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⑤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⑥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⑦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p> </div> <p>• 직장가입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②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③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④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p> </div> <p>• 지역 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p> <p>• <b>의료급여대상자</b>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유공자 등 - 의료보호대상자와 피부양자</p>	<p>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 상용, 임용, 임시직 등 고용형태나 명칭과는 상관없음</p> <p>• <b>당연적용 사업장 가입자</b>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b>&lt;제외되는 사업&gt;</b></p> <p>① 농림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범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② 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사업자, 정보통신공사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 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아래의 공사 -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 -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③ 가사서비스업</p> </div> <p>• <b>임의적용 사업장 가입자</b> - 위 제외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그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 (단, 아래 적용제외의 근로자는 제외)</p> <p>※ <b>적용 제외 근로자</b> -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단,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제외) - 공무원, 단,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 가능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아래의 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① 외국인 근로자 - 단,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예외 가능 ② 별정우체국 직원</p> </div>
	급여 및 혜택	<p>- 노령연금 - 장애연금 - 유족연금 -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p>	<p>- 요양급여 - 건강검진 - 요양비 - 출산비 - 장애인 보장구급여비 - 장제비 - 본인 부담액 보상금</p>

## 참고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 ● 임의가입자

-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미만인 자가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음

### ● 임의계속가입자

-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음

- ▶ 특수직역연금: 공무원, 군인, 교원 등의 연금제도에 가입된 자로 임금(보수) 지급 시 일반기여금으로 공제되는 경우가 해당

※ 공무원연금: 국가 및 지방공무원, 법관, 경찰관, 교육공무원(1960년 시행)

※ 군인연금: 장기복무하사관 및 장교('63. 1. 1. 시행)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74. 1. 1. 시행)

※ 별정우체국법이 정하는 연금: 별정우체국 직원('82. 7. 2. 시행)

## 참고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

### ● 개요

사회보험 혜택이 저조한 근로자수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 대상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 ● 지원대상: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평균 140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와 사업주

### ● 지원금액

- 월평균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의 사업주,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최대 60% 지원

### ● 실시연혁 및 지원내용

- '12.2월 시범사업시행(전국 16개 지역), 7월 전국 확대 시행
  - 월 평균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 사업주·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2 지원
  - 월 평균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 사업주·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3 지원
- '13.1월 근로자 소득기준 상향조정(하한선 폐지)
  - 월 평균보수 110만원 미만 근로자: 사업주·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2 지원
  - 월 평균보수 110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근로자: 사업주·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3 지원
- '13.4월 근로자 동일기준 적용
  - 월 평균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 사업주·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2 지원
- '14.1월 근로자 소득기준 상향조정
  - 월 평균보수 135만원 미만 근로자: 사업주·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2 지원
- '15.1월 근로자 소득기준 상향조정
  - 월 평균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 사업주·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2 지원
- '16.1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신규가입자 보험료 지급 확대
  - (신규가입자): 10인 사업장 월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보험료 지원률 60%
  - (기존가입자): 10인 사업장 월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보험료 지원률 40%
  - ※ 건설업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10억원 미만 사업장



## 19 3개월간 평균임금

### 19 최근 3개월간 주된 직장(일)에서 받은 월평균 임금 또는 보수는 얼마였습니까?

(세금공제전) 월평균  만원

[세금공제전 월평균 총수령액 기준, 각종 상여금 및 현물 등 포함] → **질문끝**

- ➔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봉사료(팁) 등을 포함한 월 평균 임금(급여)을 확인하여 기입
- 세금, 보험료 등 각종 공제액을 공제하기 전의 총 수령액을 기준으로 파악하고, 현금뿐 아니라 현물로도 받은 경우는 시가로 환산하여 포함시켜야 함
  - 일당으로 받는 사람과 시간급으로 보수를 받는 사람은 1개월 동안 받은 근로소득을 합쳐 조사하여야 함
  - 소득이 있는 직장(또는 하는 일)이 두 군데 이상인 경우는 주된 일 기준으로 월평균 임금을 파악해야 함
  - 취업한지 아직 1개월이 안 된 사람은 향후 받기로 되어 있는 임금(급여)을 기준으로 조사
  - 취업한지 아직 3개월이 안 된 사람이거나 학원, 병원입원 등으로 일을 할 수 없었던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취업한 달의 평균임금(1~2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조사
  - 일시휴직자는 휴직 이전의 급여수준으로 조사

#### 주의사항

소득을 높게 또는 낮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최대한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함

### III 구직에 관한 사항

#### 20 4주간 구직여부(실업자 판단 항목)

20 지난 4주내(2020. 3. 22. ~ 4. 18.)에 직장(일)을 구해 보았습니까?

1 구해 보았음      2 구해 보지 않았음 → 24번으로

[ ※ 취업예정자(1개월 이내)는 '구해 보았음'에 해당함 ]

➔ 조사대상주간에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적극적 구직활동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

#### 📖 주의사항

- '1 구해 보았음'은 조사 대상기간에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경우가 해당함
  - 공공/민간 취업알선기관에 등록 또는 의뢰      • 사업주와 면담 또는 전화상담
  - 원서접수 또는 취업시험 응시      • 취업이 보장된 상태에서 받는 무보수 수습 또는 직장훈련
  - 일자리를 찾아 사업장, 농장, 건설공사장 등을 방문      • 사업장 인허가 취득 등 자영업 운영을 위한 준비
  - 친구, 친지, 동료에게 소개 부탁
- 과거에 구직활동을 한 후 1개월 이상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 예1) 정보지 구인란에 등록만 하고, 몇 달이 경과된 상태
  - 예2) 오래 전 취업알선기관에 등록 후 지난 4주간에 확인 등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은 경우
- ※ 20 문항에서 1개월 이내 취업예정자(발령대기자)인지를 반드시 확인
  - 구직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입사시험 등에 합격하여 30일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갈 것이 확실한 사람은 '1 구해 보았음'에 해당(실업자로 간주)

#### 21 취업가능성(실업자 판단 항목)

21 조사대상주간에 직장(일)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

1 있었음      2 없었음 → 27번으로

➔ 일이 주어졌더라도 가사나 학업 등 각종의 사유로 곧바로 일을 할 수 없었던 경우 '2 없었음'으로 표시

#### 🗨 사례

졸업예정자가 졸업 후에 다닐 직장을 찾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대상주간에는 학업 때문에 즉시 취업에 응할 수 없는 경우 '2 없었음'으로 표시





➔ **22**-2. 실업자가 지난 4주 동안 했던 주된 경로를 파악함(구직 경로)  
(주된 것 2가지까지 선택 가능)

① 공공 취업알선기관

- 지방노동관서, 시·군·구 취업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워크넷  
(Worknet: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을 통한 구직
- ☞ 해당기관에서 관리하는 온라인 / 오프라인 시스템을 모두 포함

② 민간 취업알선기관

-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직업소개소 등을 통한 구직
- ☞ 해당기관에서 관리하는 온라인 / 오프라인 시스템을 모두 포함

③ 대중매체(신문, 잡지, 광고 등)

- 신문방송, 잡지, 광고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구직

④ 학교, 학원

- 학교, 학원 등의 추천, 소개, 의뢰에 의한 구직

⑤ 친척, 친구, 동료

- 친구, 친지, 동료를 통한 구직

⑥ 기타( )

- 앞에 언급한 경로 외에 다른 경로를 통한 구직



## 23 구직기간

### 23 직장(일)을 구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얼마 동안 계속 해왔습니까?

개월

→ 28번으로

#### 실제로 실업상태에서 구체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기간

#### 참고 구직기간 계산

- 구직기간 계산: 구직활동 첫 시작일로부터 조사대상주간 마지막 날까지 기준
  - 구직기간은 월단위로 조사
  - 최소 구직기간은 1개월이 되도록 하며, 15일 미만도 1개월로 기입
  - 1개월을 초과하면서 2개월 미만인 경우 올림하여 2개월로 기입

#### 주의사항

- 어떤 직업에 종사하면서 구직활동을 한 경우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구직자는 실제로 지속적인 구직활동 기간인지를 반드시 재확인

#### 참고 구직기간의 판단

- 구직알선 의뢰 후 지속적으로 결과를 확인한 경우에만 구직기간에 포함
    - 친지에게 부탁 후 1개월이 경과하도록 확인하지 않은 경우⇒ 구직활동기간으로 간주하지 않음
    - 실업상태에서 연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기간만 계산
    - 실업상태에서 취업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변경된 기간은 해당되지 않음
- 예) 3개월간 구직활동 후 2개월간 구직활동을 포기한 후 최근 2주일 전부터 다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 구직기간 1개월로 기입

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취업자 → 실업자: **구직기간은 1개월로 기입**  
(3개월 구직) (2주일 구직)





- 3 근처(주변)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 자신의 거주지 주위나 출퇴근이 가능한 근거리 범위 내에 알맞은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 4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 스스로 자신의 교육, 기술, 경험 수준이 직장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낮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 5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
  - 원하는 직장의 고용주가 나이 때문에 채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구직을 포기한 경우
- 6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 과거에 구직활동을 하였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직을 포기한 경우
- 7 육아
  - 미취학 자녀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 8 가사
  - 자기 집에서 집안일(가사)을 하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 9 통학
  - 국·공·사립학교, 학원 및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어 구직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
- 10 심신장애
  - 장기적인 질환, 정신·육체적 장애로 인해 구직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
    - 산업재해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장애를 입어 구직이 힘든 경우도 포함
    -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의 장애를 말함
- 11 기타( )
  - 상기 열거된 사항 이외의 사유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입하도록 함

#### ☞ 사례

- 예비군 훈련 등의 의무적 활동 때문에 구직활동을 할 수 없었던 경우
- 계절적 취업, 계절적 사업체 운영, 가족사업 참여 등을 위하여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 취업확정 후 발령대기(1개월 이후) 등과 같은 사유로 취업, 출근을 대기하고 있어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 일시적인 건강상태 악화 또는 병, 임신, 사고, 혼인 등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 집안의 경조사, 가족의 병·사고 등과 같은 사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 2 가사

-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가정에서 가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가사를 돌볼 책임이 있었다고 한 경우

### 📖 주의사항

- 한 가구에 가사가 2명 이상인 경우는 1명만 가사로 분류  
⇒ 주로 가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가사로 분류하며, 그 외 나머지 사람은 실제 활동상태에 따라 연로, 쉬었음, 기타 등으로 분류
- 단순히 가사활동을 조금 도운 경우는 가사로 볼 수 없음
- 농부가 농사일을 하면서 가사일을 한 것으로 응답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할 것

### 💬 사례

- 부부가 모두 가사활동을 하더라도 주로 가사활동을 하는 사람은 가사로, 다른 한사람은 실제 활동상태에 따라 연로, 쉬었음, 기타 등으로 분류
- 며느리가 가사 일을 주로 전담하고, 시어머니도 가사를 일부 도운 경우 며느리는 가사, 시어머니는 실제 활동상태에 따라 연로, 쉬었음, 기타 등으로 분류
- 정년퇴직, 폐업, 해고 등으로 집에 있는 경우를 무조건 가사로 처리해서는 안 되고, 조사대상주간의 실제 활동상태를 문의하여 기입하여야 함

## 3 정규교육기관 통학

- 조사대상주간에 초·중·고·대학·대학원에 다님(국·공·사립 학교 불문)  
※ '5 교육정도'에서 수학여부가 '2 재학'인 경우만 해당

### 📖 참고

#### ● 방학기간 또는 학교 졸업예정자의 활동상태

- 방학으로 특별한 활동 없이 집에서 쉬는 경우 ⇒ '3 정규교육기관 통학'으로 처리
- 상급학교 진학이 분명하며 집에서 쉬는 경우 ⇒ '3 정규교육기관 통학'으로 처리
- 진학이 불분명한 경우 ⇒ 조사대상주간의 주된 활동상태를 파악하여 기입(쉬었으면 '11 쉬었음'으로 처리)

**4** 입시학원 통학

-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입시학원을 다님

**5**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

- 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 다님

**6** 취업준비

- 학교나 학원에 가지 않고, 혼자 집이나 도서관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
- 자영업준비

**7** 진학준비

- 혼자 집이나 도서관 등에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공부하는 경우

**8** 연로

- 나이가 많아서 수입 있는 일, 구직활동 등을 하지 않고 일 없이 시간을 보낸 경우

**주의사항**● **연령(나이)에 따라 연로 분류시 유의사항**

- 연로는 특정 연령기준은 없으나, 나이가 50대의 경우 연로로 분류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맞지 않으며, 실제 활동상태에 따라 가사, 쉬었음, 기타 등의 활동상태로 재분류

**9** 심신장애

- 정상적인 일을 하기가 어려운 장기적인 질환, 정신·육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주의사항**

- 여기서 장애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히 나타나는 경미한 노인질환이 아니라, 심신장애로 인하여 수입이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 조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복이 예상되는 일시적 병 또는 사고는 제외

**사례**

- 병원에 입원은 하지 않았으나 장기적인 심한 질병 때문에 보호자가 필요한 사람
- 자기 침대에서 전혀 떠날 수 없는 사람
- 지적장애인(학업이나 일도 할 수 없는 사람)



### 10 군입대 대기

- 군대를 가기 위해 조사대상기간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대기 중인 경우

### 11 쉬었음

-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이 휴식을 갖고 싶어 쉬고 있거나 퇴직 후 또는 취업을 포기하고 쉬고 있는 경우

#### 사례

- 직장을 그만 두었거나 정년퇴직 후 쉬고 있는 경우
-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있는 경우

### 12 기타( )

- 상기 1 ~ 11 까지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

#### 사례

- 자원봉사: 임금이나 월급 없이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
- 구호사업: 임금이나 월급 없이 빈민, 재해자를 돕는 사람
- 가족돌봄, 여행, 선교활동, 병원입원 등







### 1 개인·가족적 이유

- 결혼
- 임신·출산
- 초등학교 자녀의 교육
-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병간호
- 상사나 동료와의 불화, 군복무, 자신의 건강상의 이유(장애와는 구별됨)

### 2 육아

- 미취학 자녀를 돌보는 일로 인해 직장(일)을 그만 둔 경우

### 3 가사

- 가사일로 인해 직장(일)을 그만 둔 경우

### 4 심신장애

- 장기적인 질환, 정신·육체적 장애로 인해 직장(일)을 그만 둔 경우
- 산업재해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장애를 입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치료가 불가능하여 직장을 그만 둔 경우

### 5 정년퇴직, 연로

- 정년으로 인하여 직장(일)을 그만두었거나 나이가 많아서 직장(일)을 계속 하기가 곤란하여 그만 둔 경우

### 6 작업여건(시간·보수 등) 불만족

- 현재 일의 작업시간이 너무 많거나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 그만 둔 경우
- 일이 너무 위험해서 다른 일로 바꾸었거나 그만 둔 경우
- 현재 일의 수입·보수가 적기 때문에 더 많은 소득(수입)을 얻기 위하여 다른 일로 바꾸거나 그만 둔 경우
- 자신이 다니던 직장의 사업부진으로 스스로 그만 둔 경우

### 7 직장의 휴업·폐업

- 사업체의 부도(도산), 휴업, 폐업 등과 같은 사유로 사업이 끝났거나 직장이 문을 닫아서 자동적으로 직장을 잃은 경우

**8 명예·조기 퇴직, 정리해고**

- 명예퇴직, 조기퇴직 등으로 직장을 그만 둔 경우
- 사업의 축소, 업무의 자동화로 인한 인력 감축
- 사업체의 사정, 개개인의 과실, 기업체 경영권의 이전, 기업합병 등으로 인하여 해고 당한 경우

**9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 일시적이거나 계절적인 일의 완료 등으로 그만 둔 경우

**사례**

겨울 스키강사, 송이버섯 채취, 농사일의 완료, 단기사업의 완료

**10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부진**

- 일용근로자인 경우에 직업소개소 등에 등록하고 호출을 기다리고 있으나 일거리가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 자영업을 하는 사람 중 자기가 하던 사업이 경기부진 등의 사정으로 사업경영이 잘 되지 않아 업종을 바꾸었거나 그만둔 경우

**11 기타( )**

- 상기 열거된 사항 이외의 사유가 해당되며, 직장(일)을 그만 둔 사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입

**30 이전 직장의 직업**

**30 이전에 어디에서 일하였습니까?**

● 사업체(직장)명 _____	※ 조사관리자 기입 _____
● 사업체(직장)가 주로 하는 일 _____	※ 조사담당자 기입 _____
● 사업체(직장) 소재지 _____ (시, 도) _____ (시, 군, 구)	

※ 이전 직장(사업체)의 종사자수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b>1</b> 1~4명	<b>2</b> 5~9명	<b>3</b> 10~29명	<b>4</b> 30~99명
<b>5</b> 100~299명	<b>6</b> 300~499명	<b>7</b> 500명 이상	

➡ 지난 1년 이내에 다녔던 사업체(직장)명과 사업체(직장)가 주로 하는 일 및 사업체 소재지를 각각 기입함



### ▶ 사업체(직장)명

- 임금근로자는 직장명을 최하단위까지 구체적으로 기입  
예) 서울지방병무청, 포스코 광양제철소, 해성전자 천안대리점  
    • 갑천초 → 갑천초등학교, 대성고 → 대성고등학교
- 여러 곳에서 일하거나 매일 다른 곳에서 일하는 사람  
    ☞ 일하는 장소 또는 일한 곳의 특징을 기입  
예) 가사도우미: 남의 가정에서, 유리창 닦이: 남의 건물에서
- 비임금근로자는 점포명이나 사업체명을 기입  
    •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가 점포명이나 사업체명이 없는 경우  
    ⇒ 「자기사업」 또는 「가족사업」이라고 기입  
    ※ 산업분류코드는 산업세분류(4자리)까지 조사관리자가 기입

### ▶ 사업체(직장)가 주로 하는 일

- 사업체(직장) 내에서 조사대상자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 사업체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알 수 있도록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입  
    ※ 산업분류 책자를 참고하여 산업분류 명칭을 기재하지 말고, 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산업활동 내용을 기입  
    예) • 실을 구입하여 원단을 직조함  
    • 판매업의 경우 도매 또는 소매를 반드시 구분해야 하며, 주로 판매하는 상품명도 기입해야 함

### ▶ 사업체(직장) 소재지

- 근무지 기준 통계를 생산하는 중요한 조사항목임
- 사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시 · 도와 시 · 군 · 구의 명칭을 기입
- 시 · 군 · 구 부호(  ) 조사담당자가 기입  
    ※ p.105 **부록 8 행정구역 코드표** 참조

### ▶ 종사자 규모

- 조사대상기간에 직장(사업체)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의 규모를 파악하는 문항
- 임금근로자: 자기가 속한 직장의 전체 종사자수를 파악
  - 본사(점) 직원인 경우: 본사 근무하는 직원 수를 기입
  - 지사(점) 직원인 경우: 해당지점 근무하는 직원 수만 기입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주를 포함한 자기 사업체 내의 전체 종사자 수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자영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종사자 수

## 31 이전 직장의 직업

### 31 이전 직장(사업체)에서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 내가 한 일 \_\_\_\_\_
- 직명(직위) \_\_\_\_\_
- 부 서 명 \_\_\_\_\_

※ 조사관리자 기입

➡ 지난 1년 이내에 다녔던 직장(사업체)에서 조사대상자가 어떠한 종류의 일을 하였는지 또는 수행하였던 임무에 대하여 묻는 항목

#### ▶ 내가 한 일

- 질문할 때 응답자에게 직업이란 말을 가능한 사용하지 말고 직장(회사, 공장 등)에서 응답자가 하는 일, 맡은 업무가 무엇인지 내용을 물어서 기입
- 직위나 직명 또는 고용상 지위, 직장 특성 등을 쓰지 않아야 함

#### 📖 주의사항

'하는 일'에 공장장, 직원, 공무원, 대표, 자영업자, 사장, 학생 지도, 회사원 등은 하는 일로 부적절

#### ▶ 직명(직위)

- 직위는 조사대상자의 직업을 명확히 하고 전문성, 권한 등을 판단하는 요소이므로 단순히 계장, 과장, 실장 등으로 기입하면 안 되고, 경리계장(6급), 책임연구원, 간호조무사 등 자세히 기입
- 직업분류코드는 직업 세분류(4자리)까지 조사관리자가 기입

#### ▶ 부서명

- 부서명이 없는 경우는 직업분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기입



### 32 이전 직장의 종사상 지위

#### 32 이전 직장(일)에서의 지위는 무엇이었습니까?

- 임금근로자
  - 1 상용근로자
  - 2 임시근로자
  - 3 일용근로자
- 비임금근로자
  - 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6 무급가족종사자

→ 질문 끝

➡ 지난 1년 이내에 다녔던 직장(일)기준으로 일한 사람이 직무를 수행한 직장(일)과의 관계를 파악

#### ▶ 임금근로자(상용, 임시, 일용 근로자) 구분 기준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	상용근로자	정해진 채용절차에 의하여 입사한 사람으로 회사의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 받는 자 또는 퇴직금 및 상여금 등 각종 수당 수혜자는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1년 미만	임시근로자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으나 일정한 사업완료의 필요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도 고용계약 기간에 준하여 판단함

• 사업완료의 필요기간에 따라 1년 이상은 상용근로자, 1년 미만은 임시근로자로 각각 구분

- 동일업체에 1년 이상 근무(계약기간이 아님)한 경우라도 고용계약이 처음부터 임시 또는 일용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우선하여 분류

예) 당초 8개월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가 계약 만기시점에 7개월 연장한 경우

→ 채용기간이 1년 3개월이나 상용근로자로 분류하지 않고 임시근로자로 분류

- 대상가구원의 응답내용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계약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분류할 것

- 응답자가 원하는 직장을 구하기 전에 '임시로 다닌다'라고 대답한 경우라도 1년 또는 1개월 이상의 계약여부를 확인

#### ▶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자영업예술가, 개인사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말하며,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

**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임금을 주는 종업원을 채용하고 있는 사람(자영업자)이 해당

**📖 주의사항**

- 가족종사자를 두고 있는 경우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분류

**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의 파트너(무급가족종사자 포함)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 개인사업자, 작가 등 예술인, 농·어부, 행상 및 노점상, 프리랜서 등을 말하며, 무급 가족종사자 외에 유급 고용원이 있는 경우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분류

**6 무급가족종사자**

- 자기 가족(동일가구 내)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정한 보수 없이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
  - 동일가구 내 가족이라도 일정한 봉급을 받는 경우는 임금근로자로 분류
  - 가구를 달리하는 가족 또는 친척의 사업체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경우에는 무급가족종사자가 아니며,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임금근로자로 분류



### III

## 조사표 견본



통계법 제32조(상실응답의무),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작성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니 성실하고 정확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표



이 조사는 통계청에서 반기별로 실시하는 국가 통계조사로 국민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고용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창출 및 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시·도	시·군·구	도로명 주소

행정구역 분류부호	조사구번호	거처 및 가구번호
-	-	-

※ 조사기준일 현재(2020. 4. 15.) 이 가구에 상주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 가 구 원 명 부

번호	가구원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 <sup>1)</sup>	성 별	생년월일	조사대상여부 <sup>2)</sup>	비 고
1			남 · 여	년 월 일	① 조사대상 ② 제외자	
2			남 · 여	년 월 일	① 조사대상 ② 제외자	
3			남 · 여	년 월 일	① 조사대상 ② 제외자	
4			남 · 여	년 월 일	① 조사대상 ② 제외자	
5			남 · 여	년 월 일	① 조사대상 ② 제외자	
6			남 · 여	년 월 일	① 조사대상 ② 제외자	
7			남 · 여	년 월 일	① 조사대상 ② 제외자	
8			남 · 여	년 월 일	① 조사대상 ② 제외자	

1) 가구주와의 관계 : ①가구주 ②배우자 ③미혼자녀 ④기혼자녀 ⑤손자녀 ⑥부모(장인, 장모) ⑦조부모 ⑧미혼형제·지매 ⑨기타

2) 조사대상여부 ① 조사대상 : 만 15세 이상인 가구원(2005. 4. 15. 기준)

② 제 외 자 : 만 15세 미만 가구원, 영외거주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등

#### ◆ 응답자 및 조사담당자 연락처

	성 명	휴 대 전 화	유 선 전 화
응답자		- -	- -
조사담당자		- -	- -

#### ◆ 비 고

### I 인적 사항

※ 만 15세 이상만 기입합니다.(2005. 4. 15. 기준)

1 연성명	2 가구주와인		3 성별	4 생년월일							
	1 가구주 2 배우자 3 미혼자녀 4 기혼자녀(배우자) 5 손자녀(배우자)				1 남자 2 여자	년 월 일					
5 학력 및 계열	0 안받았음(무학)		4 전문대 (초급대, 2년·3년제 대학 포함)	5 대학교(4년제 이상 대학 포함)	6 대학원(석사)	7 대학원(박사)	8 교육 9 예술 10 인문학 11 사회과학, 인문·정보학 12 경영, 행정·법학 13 자연과학, 수학·통계학 14 전공학과명 (학)과	17 정보통신기술 18 공학, 제조·건설 19 농림어업·수의학 20 보건 21 복지 22 서비스 (학)과	1 출업 2 재학 3 중퇴 4 휴학 5 수료	6 혼인상태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 ① 인문계열 ② 예술·체육계열 ③ 상농공수산계열 등										

「조사대상주간」은 2020. 4. 12.(일)~4. 18.(토)을 말합니다.

### II 일에 관한 사항

7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였습니까?  
1 예 → 10번으로 2 아니오

8 조사대상주간에 함께 사는 가족의 사업체 또는 농장 등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1시간 이상 일하였습니까?  
1 예 → 10번으로 2 아니오

9 조사대상주간에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직장(일)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1 있었음 2 없었음 → 20번으로  
→ 9-1. 조사대상주간에 일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일시적 병, 사고  
② 휴가·연가  
③ 교육·훈련  
④ 육아  
⑤ 가족적 이유  
⑥ 노사분규  
⑦ 사업부진·조업중단  
⑧ 기타 ( ) → 20번으로

10 조사대상주간에 주된 일 이외에 다른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1 있었음 2 없었음

11 조사대상주간에 실제 몇 시간 일하였습니까?  
1 주된 일: [ ] 시간  
2 다른 일: [ ] 시간  
3 총 계: [ ] 시간  
→ ① 1~17시간 무급가족종사자 → 20번으로  
→ ② 1~35시간 → 12번으로  
→ ③ 36시간 이상 (※ 18시간 이상 무급가족종사자는 ② 또는 ③으로 표시)

12 조사대상주간에 어디에서 일하였습니까? ※ 일시종직자의 경우 소속 직장(사업체)  
• 사업체(직장)명 [ ] ※ 조사관리자 기입  
• 사업체(직장)가 주로 하는 일 [ ]  
• 사업체(직장) 소재지 [ ] (시, 도) [ ] (시, 군, 구) ※ 조사담당자 기입

※ 조사대상주간의 직장(사업체)의 종사자수는 얼마나 됩니까?  
1 1~4명 2 5~9명 3 10~29명 4 30~99명  
5 100~299명 6 300~499명 7 500명 이상

13 조사대상주간에 직장(사업체)에서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 내가 한 일 [ ] ※ 조사관리자 기입  
• 직명(직위) [ ]  
• 부서명 [ ]

14 조사대상주간의 직장(일)에서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 임금근로자 1 상용근로자 2 임시근로자 3 일용근로자  
• 비임금근로자 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6 무급가족종사자

15 조사대상주간의 직장(일)은 언제부터 시작하였습니까?  
[ ]년 [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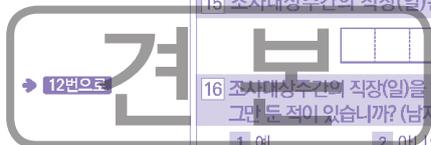
16 조사대상주간의 직장(일)을 하기 전에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하다가 그만둔 적이 있습니까? (남자는 3에 표시)  
1 예 2 아니오 3 해당없음(남자)  
→ 16-1. 일을 그만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결혼 ② 임신, 출산 ③ 육아  
④ 자녀의 교육(초등학생) ⑤ 가족돌봄 ⑥ 기타 ( )  
→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는 질문 끝

※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만 작성 (17 ~ 19)

17 조사대상주간의 직장(일)에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였습니까?  
1 정하였음 2 정하지 않았음(정년제 포함)  
→ 17-1. 고용계약기간은 얼마입니까?  
① 1개월 미만 ② 1개월~6개월 미만 ③ 6개월~1년 미만 ④ 1년 ⑤ 1년 초과~2년 ⑥ 2년 초과~3년 ⑦ 3년 초과

18 조사대상주간 중 다음의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까?  
18-1. 국민연금 또는 특수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① 직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 ③ 아니오(수급권자 포함)  
18-2. 건강보험  
① 직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 ③ 의료수급권자  
④ 직장가입피부양자 ⑤ 아니오  
18-3. 고용보험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없음(특수직역연금 가입자)

19 최근 3개월간 주된 직장(일)에서 받은 월평균 임금 또는 보수는 얼마였습니까?  
(세금공제전) 월평균 [ ]만원  
(세금공제전 월평균 총수령액 기준, 각종 상여금 및 헌물 등 포함) → 질문 끝







**조사표 주요용어 정의 및 기준**

문항	설 명	문항	설 명
2번	<p>◆ <b>가구주 개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상의 세대주와는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가구를 대표하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말함 ※ 가구주와의 관계는 가구주와 해당 가구원의 관계를 말함</li> </ul>	13번, 31번	<p>◆ <b>직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장(회사, 공장 등)에서 조사대상 가구원이 하는 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 - 직위는 단순히계장, 과장, 실장으로 기입하면 안 되고 경리계장, 간호조무사 등으로 자세히 기입  〈예시〉 내가 한 일 : 여성외류 소매 직명(직위) : 소매판매원 부서명 : 의류소매(부서명 없음) ※ 부서명이 없는 경우는 직업분류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 기입</li> <li>종사자수 : 자기가 속한 직장의 전체 종사자수를 기입 하되 본사와 지점, 공장 등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다니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만을 기입</li> </ul>
7~8번	<p>◆ <b>‘일하였음’의 정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금이나 이윤을 목적으로 일한 사람 또는 가족(동일 가구 내에 거주하는 혈연, 혼인 또는 입양에 의한 가족관계)이 경영하는 사업체 또는 농장 등에서 무보수로 일한 사람</li> <li>‘일하였음’으로 보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한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식사, 주거 또는 곡물 제공)을 받는 경우</li> <li>- 원재료를 제공한 사업체가 마련한 장소에서 작업을 행하여 일한 분량대로 돈을 받는 일의 경우</li> <li>- 원재료를 제공받아 개인의 가정에서 가공 활동을 하고 완료한 일의 분량에 따라 돈을 받는 일의 경우</li> <li>- 자기 자신의 사업장이나 농장을 가지고 이윤적 목적으로 일을 한 경우 또는 전문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수료를 받고 일하는 경우</li> <li>- 소득의 적자 여부를 불문하고 조사대상주간에 실질적인 소득을 올리지는 못했으나 계속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시간을 보낸 경우</li> <li>- 농림어업 사업체를 가진 사람이 파종, 비료살포, 살균, 여획활동 등 실질적인 농림어업 활동을 하지 못했으나 농림어업 준비, 농기구 손질, 수선 등으로 시간을 보낸 경우</li> <li>- 서로 노동력을 교환하는 형식의 활동인 풀잎이(주로 농가에서 이루어짐) 등</li> </ul> </li> </ul>	14번, 32번	<p>◆ <b>종사상 지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금근로자 : 자신의 근로에 대한 임금, 봉급, 일당, 현물 등의 형태로 일한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li> <li>- 임시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li> <li>-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li> </ul> </li> <li>비임금근로자 :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형태의 근로자를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영업자 :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특정한 사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활동하는 작가, 배우, 프리랜서 등을 말함</li> <li>- 무급가족종사자 : 동일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개인사업체나 농장 등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가족 종사자를 말함</li> </ul> </li> </ul>
11번	<p>◆ <b>취업시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대상기간 중에 실제로 일한 시간(초과근무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근로자가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지 못하더라도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일한 시간 〈예시〉 (정상근로시간 8시간×5일 = 40시간) + (초과근로시간 3시간) = 43시간</li> <li>- 주된 일은 수입을 목적으로 주로 하는 일로서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시간이 가장 많은 일, 다른 일은 주된 일 이외에 따로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일</li> <li>- 무급가족종사일과 수입있는 일을 같이 한 경우에 무급가족종사자의 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이라면 수입있는 일을 주된 일로 기입하고, 다른 일은 0시간으로 기입</li> </ul> </li> </ul>	18번	<p>◆ <b>사회보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연금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①직장가입자 ②지역가입자로 구성되며, 임의계속가입자, 임의가입자 등도 포함 ※ 특수지역연금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이 정하는 연금가입자</li> <li>건강보험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재외국민 및 외국인 근로자 포함)을 대상으로 ①직장 가입자(모든 사업장) ②지역 가입자(직장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③의료 수급권자(의료보호대상자와 그 피부양자) ④직장가입피부양자(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중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로 구성</li> <li>고용보험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단,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제외),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특수지역연금 가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등은 제외</li> </ul>
12번, 30번	<p>◆ <b>산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체명과 사업체가 주로 하는 일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근로자는 직정명을 최하단위까지 기입</li> <li>- 비임금근로자는 점포명이나 사업체명 기입 〈예시 1〉 사업체명 : 통계상회 사업체가 주로 하는 일 : 과일 및 채소 도매 〈예시 2〉 사업체명 : 통계건설(주) 둔산 APT 현장 사업체가 주로 하는 일 : 아파트 전기공사</li> </ul> </li> </ul>		